



## 수 원 고 등 법 원

### 제 1 행 정 부

### 판 결

사 건 2025누722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의 무효 확인  
원고, 항소인 1. A  
2. B  
피고, 피항소인 ○○시장  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. 2. 6. 선고 2024구합120 판결  
변 론 종 결 2025. 10. 17.  
판 결 선 고 2025. 11. 14.

### 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#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.

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,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,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.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).

### 2. 고쳐 쓰는 부분

○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4행의 '원고 주장의 요지'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 원고들 주장의 요지 』

○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'원고에게'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 원고들에게 』

○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의 '원고는'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 원고들은 』

○ 제1심 판결문 제6쪽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.

『 뿐만 아니라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,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,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인 점,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



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,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,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(대법원 2025. 9. 4. 선고 2024두47074 판결 참조).』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(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5. 11. 11.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,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및 소송 완결의 지연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)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심○○

판사      이○○

판사      이○○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1-08

별지

## 목 록

| 순번 | 전자납부번호              | 처분일자       | 귀속년월   | 세목              | 지정금액(원)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  |                     | 2015-08-12 | 201306 | 지방소득세<br>(법인소득) | 295,300    |
| 2  |                     | 2015-08-12 | 201306 | 지방소득세<br>(법인소득) | 196,870    |
| 3  |                     | 2015-08-12 | 201412 | 취득세<br>(부동산)    | 41,613,910 |
| 4  |                     | 2015-08-12 | 201412 | 취득세<br>(부동산)    | 27,742,610 |
|    | 총 4건 합계 69,848,690원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
끝.